

24. 기초의회의원 정당 표방 금지 사건

<헌재 2003. 1. 30. 2001헌가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 제1항 중 앞
괄호 부분 등 위헌제청 판례집 15-1, 7>

가.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을 받았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건이다. 모 정당소속 공주시의회의원후보자는 1998. 6. 4.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사무실 외벽에 소속 정당의 표장과 정당 소속사실 등을 공표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여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을 받았음을 표방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위 형사소송 계속 중 직권으로 관련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나. 결정의 주요 내용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위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의 영향을 배제하고 인물 본위의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체적 입법 의도는 그 정당성이 의심스럽고, 후보자가 정당의 지지·추천을 받았는지 여부를 유권자들이 아는 것이 지방분권 및 지방의 자율성 저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기에 그 인과관계가 지나치게 막연하다. 후보자로서는 심지어 정당의 지지·추천 여부를 물어오는 유권자들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데, 이는 정당을 통해 정계에 입문하려는 기초의회의원 후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또한 후보자에 대한 정당의 지지·추천 여부는 유권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유권자들은 누가 누구이고 어느 후보가 어떠한 정치적 성향을 가졌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선거에 무관심하게 되어 아예 투표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다. 이를 종합할 때, 정당표방을 금지함으로써 얻는 공익적 성과와 그로부터 초래되는 부정적인 효과 사이에 법익의 균형성도 없다. 결국, 법 제84조는 불확실한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다지 실효성도 없고 불분명한 방법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한편, 기초의회의원선거를 광역의회의원선거, 광역자치단체장선거 및 기초자치단체장선거와 다르게 취급할 만한 본질적인 차이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유독 기초의회의원 후보자만을 다른 지방선거의 후보자에 비해 불리

하게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이에 대하여 한대현, 하경철, 김경일 재판관은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위 조항은 기초의회의 구성 및 활동에 정당의 영향이 배제된 순수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필요불가결한 조항으로, 자신의 정치적 이념 및 정당과 관련된 정보는 정당의 당원경력표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알릴 수 있으며, 후보자의 정당 표방금지로 인한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이라는 이익이 후보자의 공무담임권 및 선거운동 자유의 침해로 입게 되는 손해보다 더 크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에 대하여 차별취급을 한 것도 필요·최소한의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사후경과

동일한 조항에 대하여 우리 재판소는 1999. 11. 25. 99헌바28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으로 판시하였으나, 이 사건 결정으로 그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2004. 3. 12. 위 결정에 따라 법 제84조 중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부분이 삭제되어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도 정당 지지나 추천 표방이 가능하게 되었다.